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9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김재진, 고광민, 김경훈,  
김길영, 김영철, 김춘곤,  
남궁역, 남창진, 박 석,  
서상열, 서호연, 이병운,  
이상욱, 이숙자,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산사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 및 사방사업법 에 명시된 '사방'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 나.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제2항 본문”을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사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을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계인, 또는”을 “관계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인,”을 “관계인”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관련경비”를 “수당 및 여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 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 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 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p> <p>②·③ (생   략)</p> <p>④ <u>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공 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 람으로 한다.</u></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② (생   략)</p>	<p>제4조(구성) ① ----- ----- ----- <u>제21조제2항</u>----- ----- ----- -----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 태·사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u></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 ----- <u>한 차례</u>----- ----- <u>위원의</u> <u>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u>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전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  
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  
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해당 안전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  
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견청취) ① -----  
-----  
----- 관계인 또  
는 -----  
-----  
-----  
-----.

② -----  
----- 관계인 -----  
-----  
-----  
-----.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  
-----  
-----  
----- 수당 및 여비-----  
-----  
-----.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며 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